

다전공 이수 규정

제정 2018. 10. 31.

제11차 개정 2025. 9.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7조에 따라 다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전공”이라 함은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을 말한다.
2. “제1전공”이라 함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 또는 배정된 전공을 말한다.
3. “제2전공”이라 함은 제1전공 이외의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말한다.
4. “복수전공”이라 함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융합전공”이라 함은 둘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전공을 말한다.
6. “부전공”이라 함은 제1전공 이외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전공 적용 범위는 전 학과(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한다(평생교육융합대학의 다전공은 동일 대학내에서만 가능). 다만, 미래인재대학의 유아교육학과, 한의과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놀이심리치료학과로의 다전공은 불허한다. (개정 2019.6.5., 2022.4.26.)

② 전공(학과)별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공 또는 학과별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신청자격) 다전공 이수 신청자격은 7학기 이내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수강지도) ①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의 교육과정은 승인 진입 시(승인연도 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1.3.31.)

② 다전공을 선택하고 실험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6.5.) (항 변경 2021.3.31.)

제6조(실험실습비)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실험실습을 요하는 과목을 다전공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복수전공

제7조(신청 및 허가)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 제2전공 이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1전공 학과(부)장 및 제2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1.)

② 부전공으로 이수중인 학과(부)를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전공 자격을 상실한다.

③ 복수전공자가 이수중인 제2전공으로 전과할 수 없다.

제8조(변경 및 포기) ① 복수전공 이수를 변경 또는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2전공 변경·포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1.)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복수전공을 포기한 때에는 제1전공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복수전공 학점 및 졸업논문)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과(부)별로 지정된 계열(학부)기초 및 최소 전공학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제1전공 : 학과(부)별로 지정된 계열(학부)기초 6 ~ 12학점,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전공과정 36학점 이상. 다만, 교직이수자는 최소전공 인정학점과 관계없이 교직이수 전공(학과)의 전공학점을 5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제2전공 : 계열(학부)기초 6학점 이상,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전공과정 30학점 이상

② 삭제 (2024.6.5.)

③ 삭제 (2024.6.5.)

④ 제1전공의 계열(학부)기초 과목과 제2전공의 계열(학부)기초과목이 동일한 경우 해당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또한,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제2전공의 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2개 전공 범위 내에서 6학점 이내로 중복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9.6.5.)

⑤ 삭제 (2025.7.7.)

제3장 융합전공

제10조(교육과정 운영)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운영규정 및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따른다.

제11조(융합전공의 설치) ① 융합전공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부(학과(전공))를 포함한 다)간의 협의를 거쳐 기획처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융합전공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2.4.20., 2022.10.17.)

② 기획처장은 융합전공기획위원회를 거쳐 융합전공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을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융합전공과 관련이 많은 단과대학에 설치한다. (개정 2019.6.5., 2022.4.20.)

③ 융합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행정업무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서 지원한다.

- ④ 전공주임교수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융합전공 개설 신청 시에는 교과과정 편성안 및 학위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⑥ 개설된 융합전공의 전공명 및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22.10.17.) (개정 2022.11.17., 2023.11.1., 2025.9.2., **2025.9.18.**)

제11조의2(융합전공의 정원) 융합전공의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12조(융합전공기획위원회) ① 융합전공의 신설, 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합전공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그리고 4인 이내의 일반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9.6.5., 2022.4.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합전공의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및 소속 단과대학 변경에 관한 사항
2. 융합전공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 간 융합전공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융합전공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6.5., 2022.4.20.)

제13조(신청 및 허가)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 제2전공 이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1전공 학과(부)장 및 제2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변경 및 포기) ① 융합전공 이수를 변경 또는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2전공 변경·포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융합전공을 포기한 때에는 제1전공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융합전공 학점 및 졸업논문)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융합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전공학점 이상(계열기초 과목 이수와 전공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전공의 계열(학부)기초 과목과 제2전공의 계열(학부)기초과목이 동일한 경우 해당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또한,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제2전공의 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2개 전공 범위 내에서 6학점 이내로 중복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9.6.5.)

③ 삭제 (2025.7.7.)

제16조(융합전공의 폐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3학기 연속 신청학생이 15명 이하인 경우
2. 전공운영 중 연속 3년간 신청학생의 누적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
3. 그밖에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융합전공에서 융합전공 운영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유보할 수 있다.

제16조의2(융합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임교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FIND칼리지 학장이 개설하는 융합전공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제3항 제3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17.]

제4장 부전공

제17조(신청 및 허가)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 소속 학과(부)장 및 부전공하려는 전공의 학과(부)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 부전공이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1.)

제18조(변경 및 포기) 부전공 이수를 변경 또는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부전공 포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1전공 및 부전공의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1.)

제19조(이수학점) ①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부전공 학과(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에서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동일학부 내에서 부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부의 2학년 공통과정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3,4학년 과정에서 필수포함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타 학부내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는 2학년 공통과정은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3,4학년 과정에서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부전공 학과(부)의 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과목의 학점 수만큼 부전공 학과(부)의 다른 전공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점인정

제20조(학점인정) ① 제2전공(복수·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제2전공 학점만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제2전공(복수·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제2전공을 변경 또는 포기하였을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인정학점(21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제2전공(복수·융합전공) 및 부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제2전공과 부전공 과목은 제2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부전공자가 졸업 시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제2전공(복수·융합전공) 및 부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재학연한 이내에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장 학위수여

제21조(학위 등) 다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전공에 관련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학위증에 이수한 전공을 모두 표기한다.

제22조(학위수여)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제2전공(복수·융합전공)을 이수중 일 때에는 제1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제2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53, 2018.10.3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복수전공 규정 및 부전공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95, 2019.06.0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9조(복수전공 학점 및 졸업논문) 제4항은 2019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01, 2021.03.31.)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71, 2022.04.26.)

- ① 이 규정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적용범위) 제1항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활상담학과는 놀이심리치료학과로 본다.

부칙 (기획예산팀-5460, 2022.10.17.)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697, 2022.11.17.)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285, 2023.11.01.)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329, 2024.06.05.)

이 규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484, 2025.07.07.)

이 규정은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908, 2025.09.02.)

이 규정은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115, 2025.09.18.)

이 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2.10.17.) (개정 2022.11.17., 2023.11.1., 2025.9.2., 2025.9.18.)

융합전공의 전공명 및 학위명

설치 유형	전공명	정원	학위명	주관대학	주관(참여) 학과	개설일
대학간 공동운영	정밀의료융합전공	10	공학사	강원대학교	강원 LRS 공유대학	2023.3.1.
	헬스케어융합전공	10	공학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 LRS 공유대학	2023.3.1.
	강원형반도체융합 전공	30	공학사	강원대학교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2024.3.1.
	포용사회융합전공	100	문학사	인천대학교	포용사회 융합인재양성 권소사업 (평생교육상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FND칼리지, 사회복지학과, 자유전공학 부)	2025.9.1.

승 인	제1전공 학과(부)장	제2전공 학과(부)장

소속학과(부) 및 전공	학과(부)전공 (주, 야)					
(복수·융합) 학과(부)/전공	학과(부)전공 (주, 야)					
성명			학년		학번	
연락처(자택)			휴대폰			

교무연구처장 귀하

- 제2전공(복수 · 융합) 신청은 7학기 이내 재학생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단, 전공(학과)별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인원제한을 할 수 있음.
- 제2전공(복수 · 융합) 이수허가 후, 각 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전공이수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각 36학점이상으로 함.(미취득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제2전공(복수 · 융합)의 수강지도는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학과(부)장에게 받아야 한다.
- 제2전공 포기자는 매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반드시 제2전공(복수 · 융합)변경(포기)신청서를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의 교육과정은 승인 진입 시(승인연도 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6.5., 2021.3.31., 2022.4.20.)

제2전공(복수·융합) 변경·포기 신청서

학 인	제1전공 학과(부)장		이수 중인 제2전공 학과(부)장		변경할 제2전공 학과(부)장
소 속 학과(부)			(복수·융합) 전공명		
성 명		학 년		학 번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변 경 전	(복수·융합)전공		변 경 후	(복수·융합)전공	
포 기	예 () 포기할 경우, 예()안에 0표 기재		◎ 제2전공(복수·융합전공) 포기자는 기 취득한 제2전공 학점을 기재할 것 _____ 학점 (제1전공 _____ 학점)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상기 본인은 다전공 이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제2전공(복수·융합전공) 변경·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무연구처장 귀하

상기 본인은 다전공 이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제2전공(복수·융합)을 포기하면서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기에 부전공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무연구처장 귀하

【유의사항】

1. 제2전공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수용능력에 라 변경불가 할 수 있음.
2. 제2전공 포기 시 제1전공 졸업이수학점(입학년도기준)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3.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의 교육과정은 승인 진입 시(승인연도 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6.5., 2021.3.31., 2022.4.20.)

부전공 이수 신청서

승 인	제1전공 학과(부)장	부전공 학과(부)장

학년 : 학 번 : 성 명 : 연락처(자택) :
휴대폰 :

제 1 전 공 대학 학과(부) 전공 (주, 야)

부 전 공 대학 학과(부) 전공 (주, 야)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상기 본인은 학칙 제37조 및 다전공 이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전공 이수를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 무 연 구 처 장 귀하

【유의사항】

1. 부전공 이수 허가 후 전공학점(필수포함)은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부전공의 수강지도는 부전공학과(부) 학과(부)장에게 받아야 한다.
3.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의 교육과정은 승인 진입 시(승인연도 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학	제1전공 학과(부)장	이수중인 부전공 학과(부)장	변경할 부전공 학과(부)장
인			

소속학과(부)		부전공 학과(부)	
성 명		학년	학번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변 경	학과(부)에서 학과(부) 전공으로		

상기 본인은 다전공 이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전공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인)

교무연구처장 귀하

1. 부전공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수용능력에 따라 변경불가 할 수 있음.
2.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의 교육과정은 승인 진입 시(승인연도 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6.5., 2021.3.31., 2022.4.20.)

부전공 포기 신청서

부전공 포기 신청서				학	제1전공 학과(부)장	이수중인 부전공 학과(부)장
				인		
소속학과(부)			부전공 학과(부)			
성 명			학년		학번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상기 본인은 다전공 이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전공 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 무 연 구 처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9.6.5.) (개정 2022.4.20., 2022.10.17.)

융합전공 개설 신청서

1. 융합전공 개요 및 설치목적

융합전공 개요			
융합전공 설치목적			
설치유형	☐ 둘 이상의 학과 (제2조 제5호)	☐ FIND칼리지 (제16조2)	☐ 국내·외 대학간 공동운영(제16조2)

2. 전공명칭 및 참여학과

융합전공명 (영문명)	주관대학	주관학과	정원	참여학과	학위명 (영문명)

3. 책임·참여교수 명단

구분	소속	성명	역할
책임교수			
참여교수			

4. 해당 융합전공과 관련된 전공에 소속된 전임교수 동의서

소속	성명	동의여부	서명

5. 교육과정

가. 교육목표 :

나. 전공능력 및 정의 :

다. 전공교과 과정(붙임2. 교과과정표 병행 작성)

학 년	이수 구분	과목 분류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총 학점	총 시간	신설 여부	담당교수 (예정)
				학점	이론	실습	학점	이론	실습				
	계기	이론										신설	
	전선	실습										기존	
	전필												
합 계												-	-

※ 교육과정 편성 지침(융합전공)에 따름

다전공 이수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융합전공 개설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융합전공 발전계획서 1부
 2. 교과과정표(엑셀양식) 1부
 3. 교과과정개발보고서 1부
 4. 기타 참고 자료(참여 학과 교수 회의록 등)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관 대학	000 대학	학 장	(인)
	주관 학과	000 학과	학 과 장	(인)
		000 학과	책임교수	(인)
	참여 학과	000 학과	학 과 장	(인)
		000 학과	학 과 장	(인)
	참여 교원	000 학과		(인)

기획처장 귀하